

2026년 제5차 강원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팀/개인별지원팀]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채용 제2026-63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2에 의거한 공공기관으로 2026년 제5차 강원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팀 / 개인별지원팀] 사업 업무에 참여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원서에 작성한 모든 기재사항은 향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한 사실 확인이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 채용과정의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연령, 성명, 성별, 학교명 등 학력, 출신지역, 가족 관계 등) 작성 시 채용과정에서 불이익(불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1) 장애아동지원팀

인원 (직책)	부서 (직급)	담당업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표 하단 참고) (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장애아동 지원팀 (복지 행정직 /계약직 2급)	[장애아동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장애아동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주업무) -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 장애아동지원 네트워크 사업 등 ○ 근무기간: 2026. 7. 1.~ 2027. 10. 31.	■ ①호, ②호, ③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 사항을 가진 자 중 5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참고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인원 (직책)	부서 (직급)	담당업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1명	장애아동 지원팀 (복지 행정직 /계약직 3급)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업무]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주업무) - 장애아동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장애아동지원 네트워크 사업 등 ○ 근무기간: 2026. 7. 1.~ 2027. 10. 31.	■ ①호 자격을 필수로 보유하고, ②호의 자격요건을 필수로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요건의 언어재활사, 특수교사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 사항을 가진 자 중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1명	장애아동 지원팀 (복지 행정직 /계약직 4급)	[장애아동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장애아동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주업무) - 장애아동 및 보호자 접수·초기상담 및 욕구사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사례 관리 및 서비스 연계 - 장애아동지원 네트워크 사업 지원(부업무) ○ 근무기간: 2026. 7. 1. ~ 2027. 10. 31.	■ ①호, ②호, ③호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① [참고2]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 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참고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2] 개인별지원팀

인원 (직책)	부서 (직급)	담당업무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1명	개인별 지원팀 (복지 행정직 /계약직 4급)	[개인별지원팀] 개인별지원계획, 선정조사 - 상담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 최종증통합돌봄서비스, 활동서비스, 가족휴식, 부모교육 등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수행 - 기타 센터 내 사업 수행 등 ○ 근무기간: 2026. 7. 1. ~ 2026. 12. 31. ※ 채용 이후 근무하게 될 세부 소속팀 (개인별지원1팀, 개인별지원2팀)이 확정	(지원자격)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을 선고받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 (표 하단 참고)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참고2)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자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을 가진 자 중 2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위를 보유한 자 (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 기간제 계약직의 근무기간을 20개월로 운영하고 있어, 기존에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한 누적 근무 기간과 본 채용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20개월을 초과하는 자는 입사지원이 불가하며, 허위사실로 지원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단,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은 합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지원자격 관련 참고사항

(참고1) 본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 결격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아동지원팀

※ 장애아동지원팀 (2급) 지원 자격 : ①(참고2), ②(참고3), ③(참고4) 지원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

※ 장애아동지원팀 (3급) 지원 자격 : ①(참고2)를 충족하고, ②(참고3)의 경력 3년 이상을 모두 충족

※ 장애아동지원팀 (4급) 지원 자격 : ①(참고2), ②(참고3), ③(참고4) 지원자격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참고2) 자격 기준

구분 (1개 이상 충족)	장애아동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기준)
1.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2. 전문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2)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	---

② (참고3)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 판단 기준

구분		유관 기관
팀 장	공통	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근거 특수교육기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 공공기관, 행정기관
	장애아동 지원팀	바.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근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근거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제32조 근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아. 「의료법」 제3조 근거 의료기관 자. 「지역보건법」 제10조 근거 보건소, 보건의료원 차. 지방자치단체 조례 근거 영유아·아동 발달지원 사업 관련 기관
팀원 (공통)		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 공공기관, 행정기관 바. 「영유아보육법」 제7조 근거 육아종합지원센터 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근거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 제32조 근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아. 「의료법」 제3조 근거 의료기관 자. 「지역보건법」 제10조 근거 보건소, 보건의료원 차. 지방자치단체 조례 근거 영유아·아동 발달지원 사업 관련 기관 카.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인, 기관, 시설 등 또는 일반기업체

③ [참고4]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 판단 기준

구분		채용 직무와 관련된 전공 분야
팀장	공통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및 유사계열 학과
	장애아동 지원팀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언어재활(치료)학, 의학
팀원	공통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전산학, 회계학, 물리치료학, 작업치료학, 언어재활(치료)학, 의학 및 유사계열 학과

2) 개인별지원팀

(참고2) 아래 지원자격 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별표1]

구분 (1개 이상 충족)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 기준)
1.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2.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3. 변호사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4. 상담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가.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 한정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다.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마.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바.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② 지원직무 관련 경험 혹은 경력사항 판단 기준

구분	유관 기관
팀장	공통 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근거 상담서비스제공기관 마.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 공공기관, 행정기관

구분		유관 기관
	개인별지원팀	상동
	권익옹호팀	사.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근거 법률사무총사기관
	운영지원팀	아.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인, 기관, 시설 등 또는 일반기업체
팀원 (공통)		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한 장애인단체 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근거 장애인복지시설 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31조 근거 상담서비스제공기관 마. 「사회복지사업법」 근거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근거 공공기관, 행정기관 사.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근거 법률사무총사기관 아. 기타 법률에 의해 설치된 법인, 기관, 시설 등 또는 일반기업체

③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 판단 기준

구분		채용 직무와 관련된 전공 분야
팀장	공통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및 유사계열 학과
	개인별지원팀	상동
	권익옹호팀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및 유사계열 학과
	운영지원팀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전산학, 회계학 및 유사계열 학과
팀원(공통)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정신의학, 심리학, 재활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사회학, 전산학, 회계학 및 유사계열 학과

2. 근로조건

○ 근무기간

부서	근무기간
장애아동지원팀	2026. 7. 1.(수) ~ 2027. 10. 31.(일) (16개월)
개인별지원팀	2026. 7. 1.(수) ~ 2026. 12. 31.(목) (6개월)

○ 근무장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옥산포길 17-8

한국장애인개발원 강원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근로시간: 주 40시간(일 8시간 / 09:00~18:00 / 월~금요일) 근무

○ 기 본 급

구분	기 본 급
장애아동 지원팀 (복지행정직 /계약직 2급)	월 2,477,200원 ~ 월 3,183,000원(세액공제 전)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급 1호봉~(최대)8호봉 기준
장애아동 지원팀 (복지행정직 /계약직 3급)	월 2,360,100원 ~ 월 2,815,600원(세액공제 전)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3급 1호봉~(최대)7호봉 기준
장애아동 지원팀 (복지행정직 /계약직 4급)	월 2,281,800원 ~ 월 2,475,400원(세액공제 전)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1호봉~(최대)5호봉 기준
개인별지원팀 (복지행정직 /계약직 4급)	월 2,281,800원 ~ 월 2,475,400원(세액공제 전)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4급 1호봉~(최대)5호봉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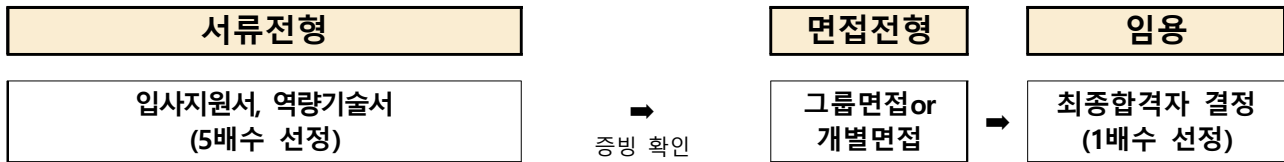
○ 기타수당: 해당 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따른 수당은 별도 지급

3. 전형별 일정

추진절차	일 정	기타사항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2026. 5. 19.(화)~2026. 6. 1.(월) 18:00	기한(15일) 내 접수에 한함
서류전형	2026. 6. 8.(월) 10:30	-
서류전형 결과 발표	2026. 6. 15.(월)	개별 안내 예정
증빙서류 제출	2026. 6. 15.(월) ~ 2026. 6. 17.(수) 18:00	서류검증 후 면접대상자 안내
면접전형	2026. 6. 22(월) 14:00	면접장소: 센터 2층
최종합격자 발표	2026. 6. 25.(목)	개별 안내 예정
신규임용	2026. 7. 1.(수)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4. 전형별 절차



※ 채용규모, 채용전형, 선발배수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전형방법 및 평가요소

구분	총배점	항목별배점	평가요소	합격자 결정
서류심사	100점	20점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사항	서류심사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 순
		20점	직무관련 경력(경험)사항	
		20점	전문성 및 조직 이해능력	
		20점	문제해결능력 및 직업윤리	
		20점	역량기술서 충실성·논리성	
면접심사	100점	20점	태도 및 가치관	면접심사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 순
		20점	직무이해도 및 관련 경력	
		20점	직무관련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20점	발전가능성	
		20점	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기타기준

※ 심사위원 제척 기준

- 심사과정 중 불가피하게 제척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척위원 확인서' 작성 후 해당 응시자의 심사에서 제외하며, 제척위원의 평정값은 제외함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등록 장애인 ③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④ 경력단절여성 ⑤ 전단계 전형의 점수가 높은 자 ⑥ 내부위원의 심사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순위 부여

※ 전형별 예비합격자 제도 기준

- (운영) 채용분야별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 순위 부여
 - 허위증빙서류 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추가(단, 서류전형 합격자가 응시 불참의 의사로 증빙·가산점 서류를 단순 미제출한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적용하지 않음)
 -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채용 후 6개월 이내 퇴직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별로 선발

6. 지원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5. 19.(화) ~ 2026. 6. 1.(월) 18:00 까지
- 제출방법 : 온라인 채용홈페이지 접수(<https://koddicpdd.fairyhr.com>)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및 역량기술서

※ [별첨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안내] 필히 확인 후 제출

※ 채용홈페이지는 구글 크롬, MS Edge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지원서 최종제출 또는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7. 면접 전형

○ 일정/장소: 2026. 6. 22.(월) / 세부일정 개별 공지

강원특별자치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2층 회의실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옥산포길 17-8)

○ 응시 대상 : ① 서류전형, ② 증빙서류검증을 모두 통과한 자

○ 전형 방법 : 개별면접(우리 원 면접평가 항목 기반 질의응답 방식)

○ 제출서류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구분	제출서류
경력사항	▶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사항 기재자 필수) -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된 모든 경력에 대한 증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사항 기재자 필수) - 본인 직장가입자 내역만 발급 ☞ ①경력(재직)증명서와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내역) 모두 제출해야 함. 단, 아래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출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기간 중 반드시 채용사이트 Q&A게시판에 문의해야 함. ① 경력기관의 폐업·휴업·합병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③ 기타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분	제출서류
지원자격	▶ 지원자격 증명서(필수) - 입사 지원 시 선택한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증빙 제출 ❶ *장애아동지원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6]에 해당하는 자격증 *개인별지원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자격증 ❷ 지원직무 관련 경력(재직)증명서 ❸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우대사항	▶ 우대사항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 시 선택한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증빙 제출 * 자격증사본, 교육사항증명서 등
가점항목	▶ 가산점 및 동점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중복선택 시 모두 제출)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가산점 미적용이어도 해당자는 반드시 제출(동점자 처리 기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지역인재 : 졸업(예정)증명서[학사(전문학사 포함) 기준] *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 경력단절여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증빙가능 서류 - 자립준비청년 : 자립수당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 재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청년인턴 수료자 :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인터넷으로 발급한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폐업증명서 등) 제출 시 증빙서류 제출마감일 이전 3개월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하며 문서번호가 보이게 발급 및 제출

☞ 경력증명서,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직업교육 이수 수료증, 청년인턴 수료증의 경우 발급일자 제한 없음

☞ 유효기간이 정해진 증빙서류의 경우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증빙서류 미제출, 일부 미제출,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경우 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점 적용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반드시 제출

※ 지원 자격 확인 시 제출한 서류는 진위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되며, 출신학교 등 편견 요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음

※ 온라인채용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접수처에 별도 문의

8. 가산점 사항

구분	대상자(요건)	가산점수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의 10% 또는 5% (당해 법률에서 정하는 가산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각 전형별 5점	장애인증명서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자	서류 · 필기전형 2점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경력단절 여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공고 시작일 기준 연속된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서류 · 필기전형 2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 제 2호에 따른 수급자	서류 · 필기전형 3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서류 · 필기전형 3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서류 · 필기전형 3점	다문화가족 증빙 가능 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자 ※ 공고 시작일 기준 5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서류 · 필기전형 3점	자립수당 수급자확인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재직자	공고 시작일 기준으로 우리 원에 재직 중인 자 ※ 퇴사자 미해당	공고 시작일 기준 연속된 재직기간에 따라 서류 · 필기전형 가산점 부여 .1년 이상 3년 미만: 3점 .3년 이상: 5점 ※ 재직기간 중 하루이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 연속된 재직기간으로 불인정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청년인턴 수료자	우리 원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 · 필기전형 2점	수료증 또는 경력증명서

※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산점은 전형별 과락점(60점 미만)이상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합격 이후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함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단, 채용분야가 보존 제한경쟁인 경우에는 제외) (근거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가점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반드시 입사지원 시 발급하여 제출 필요

9. 기타 사항

- 우리 원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기재할 수 없으며, 기재 시에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를 비롯한 각 채용전형에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가족사항 등이 인지되거나 유추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해당될 시 불이익 조치함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하며, 착오로 작성되거나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자동 탈락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및 예비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자문서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서면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응시자가 요청할 경우 우편 등을 통해 반환됨(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 대상이 아님)
- 채용 전후로 부정사실이 발견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채용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채용 및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 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 시 증빙서류는 사실 확인 예정이며, 직원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역사항 등)를 수집함
- 본 채용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되거나 조정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 강원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팀 업무담당자 (033-817-2357)

2026년 5월 19일

한국장애인개발원장